對外秘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2015. 8. 18. 기획조정실

1. 차○○ 판사 프로필

(사진)	차○○ (35기) 1977. 10. 30.	19○○ ○○ ○○고 졸업 20○○ ○○대 법학과 졸업 20○○ ○○○○지법 (정○○ 前 부장판사 우배석) 20○○ ○○○○지법 20○○ ○○지원 20○○. 8. ~ 20○○. 2. ○○ 장기해외연수(1년 6개월)

- **장애인 관련 법률**에 각별한 관심 ⇨ 다수 논문 집필
  -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와 친분 두터움
- ○○대학교 대학원 **사회보장법 전공**
- 現 **국제인권법 커뮤니티** 회원
- **○○ 장기해외연수**(1년 6개월, ○○○○○연구소) ⇨ **방대한 양의 충실한 해외연수 보고서**로 **행정처에서 호평**을 받았음

2. 사건 경과

▣ 8. 11. 코트넷에 글 게시

- 8. 7. **Facebook**에 상고법원 및 사실심 충실화 문제에 대하여 고민 중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손○○ 교수(성균관대 로스쿨)의 글 링크
  - 손○○,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 법률신문 연구논단
- 8. 11.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토론광장, 커뮤니티** 등에 **"사실심 충실화**

관련 판사 수 대폭 증원과 상고제한 추진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 게시

-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주요안건 게시판 중 토론마당(법관 외 직원들도 열람 가능), 민사재판커뮤니티, 국제인권법 커뮤니티

● 8. 11. 친분 있는 판사들에게 같은 글을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의견 구함

- 이메일에 대한 전체회신의 방법으로 친분 있는 판사들과 활발한 토론 중

▣ 8. 11.자 코트넷 게시글의 주요 내용

● 상고법원 도입의 전제로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고심의 비중이 고착되거나 악화**되고, 이는 사실심 판단이 보다 자주 뒤집힐 가능성을 늘려 **사실심에 대한 심리를 더욱 약화**시킴

● 늦더라도 정공법으로 **상고제한 제도**를 추진하면서 **판사 1인 당 사건부담**을 대폭 줄여서 사실심을 충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 호○○ 교수, 손○○ 교수의 주장을 논거로 사용

● 현재 우리나라의 **판사 1인 당 사건 수**는 **독일의 3~4배**이나, 독일보다 사건 처리 속도는 빠름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비정상적인 **판사 1인 당 사건 수**를 **대폭 감소**시키는 것

- 법원행정처가 사실심 충실화 방안으로 제시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전문심리관제도, 특성화 법원 제도 등은 본질적 수단이 될 수 없고, 극히 일부 사건에 한정된 효과만 있을 뿐임

- 차○○ 판사 본인의 경우 독일식 집중구술심리모델을 시도하고 있으나, **거의 변론 전날에 날을 새게 되고, 야근과 주말근무**가 더 늘어나고 있음

● **판사 수를 최소 1.5배, 최대 3배까지 증원**해서 **독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사 1인 당 사건 수를 줄이면 **사실심 충실화**가 가능해짐

▣ 판사들의 반응

● 게시글이 **높은 조회 수**를 보이면서 **판사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주요안건 게시판 중 토론마당 ⇨ 8. 13. 기준 조회수 180

- 민사재판커뮤니티 ⇨ 조회수 662(수정 前 글) 및 525(수정 後 글)

● 댓글을 분석해 보면 **판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아래 4가지로 나뉨

① **법관 수 대폭 증원**에 찬성(이○○, 권○○ 부장판사, 박○○, 이○○ 판사)

② 법관 대폭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법관 보조인력 대폭 증원**(사법보좌관, 상근조정위원, 재판연구원 등 비법관인력 대폭 충원, 일반 법관과 처우를 달리하는 특정분야 전담법관 확충)이 현실적인 대안임(문○○ 부장판사)

③ 법관 수 대폭 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판사들이 공동의 의견을 모아서 **사건 적체를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심리기법을 실험**해야 함 ⇨ **지나친 과로와 편법적인 재판 진행을 멈추는 실천(예: 사건 적체 집단 결의)** 필요(홍○○, 오○○, 김○○ 판사)

④ 조정전치주의 등 **조정활성화를 위한 시도**를 해야 함(정○○ 판사)

▣ 현재까지 법원행정처의 대응

● 8. 11. 사법지원실 이○○ 심의관이 사실심 충실화의 내용을 설명

- 특히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으로 2019년까지 판사 정원 370명이 순차 증원될 예정임을 설명

● 이○○ 판사의 설명 글에 대해 정○○ 판사가 댓글로 아래와 같이 질문하였으나, 아직 답변하지 않은 상태

- "상고법원 도입으로 심리불속행 제도 폐지되면, 상고법관의 수와 연구관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로 인해 사실심의 결원이 발생하면 앞으로 예정된 법관 증원으로 결원 보충이 가능한지"

3. 차○○ 판사의 상황

▣ 코트넷 글 게시 경위

● 재판 준비에 매우 철저한 성실한 성격의 소유자

- 재판 전날은 거의 밤을 새우고, 수시로 야간 및 주말 근무

- 사건 메모를 하다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함

> ☑ 8. 11.자 이메일
> 과로 속에 살아온 지난 날이 슬퍼서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 직전에, 메모를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작성하다가,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달려갔는데, 임종은 못 뵈었는데, 그 때 참 슬펐는데, 다시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1-2일 연속으로 날을 새다시피 하지는 않지요. 재판에 대한 기대기준을 낮추어야겠지요. 과로사 위험을 낮추려면. 한국에 만연한 과로사회에서, 판사만 주 8시간 보장받으면서 판결을 쓰는 것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실험하는 모델에서 평균 근로시간은 일 8시간이 아닌 일 10시간을 목표로 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기타 업무에 쓰지 않은 시간을 모두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실근로로 매일 10시간을 일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사실심 충실화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독일 유학에서 복귀한 후, **독일식 집중심리를 민사재판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재의 업무량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코트넷에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임

> ☑ 8. 12.자 이메일
> **300건대 초반의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주 50-60시간의 근로와 반복적인 날샘근무**로 이런 성과를 낸 것은 일반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실험한 모델은, **전국 법원에서 일반화하기에는 사실 실패**입니다. 지금의 사건 배당 수준하에서는. 그런데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어서,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과도한 초과근로시간을 적정한 수준의 초과근로로 줄일까. 제가 실험한 모델은 꽃도 못 피어보고, 실험자의 체력과 건강 문제로, 다시 퇴행의 방향으로 내리막을 걷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타협을 한 판사가 저 혼자만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아니 상당히 아쉽다는 것입니다. **사건배당이 1/2로만, 아니 1/1.5 정도만 되면, 계속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까지 보완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결성 화해권고라는 묘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독일 판사보다 높은 효율로 얼추 비슷한 재판과정의 투명화와 신뢰회복 기능을 가지는 집중 구술변론 모델을 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 다함께 사건적체를 감수하자는 다른 판사의 주장에 대해 "사건적체를 감수할 용기가 없다"고 답변

☑ 8. 13.자 이메일
지금 토론의 과정에서, 판사 수 증원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과로를 줄이고, 비정상적인 사건처리 관행을 버리자. 사건을 빨리 처리하자는 강박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 판사님부터 줄여 보십시요. 그러면 대법원장님을 설득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못하실 것입니다. 저도 고민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판사 한 100명이 같이 한다면 해볼만 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 상고법원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 견지 ⇨ 법관증원 + 상고허가제

● 상고법원이 핵심의제로 설정되면서 **하급심 법관 증원**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 지적

☑ 8. 11.자 이메일
지금 상황을 보십시요. 1심 판사의 대폭 충원이 사실심 충실화의 가장 큰 과제라고, 판사들, 변호사들, 학자들의 상당수가 일치하여 이야기하지만, 상고법원안과 결합된 사실심 충실화 방안 건의문에서 단 한줄이라도 언급이 되었습니까? **부적절한 선을 넘나드는(예를 들어 칼럼의 사실상 대필작성 등) 입법로비의 치열함과 뻔뻔함**을, 1심 판사 대폭 증원에 일부라도 쓸 수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고법원이 가장 우선해서 추진해야 할 지상역점 과제니까요.

● 대법원의 업무부담이 문제라면, **하급심의 업무부담도 문제**라고 지적

☑ 8. 11.자 이메일
대법관 1인의 사건부담 수가 너무 많아 상고심 판단이 약화되고, 느려지고,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대법관 1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심의 판사들에게도 공통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뭐, 대법관이 가진 1건의 가치와 의미가 사실심 법관 1인이 가진 1건의 가치와 의미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요(혹은 없을까요).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대법관 1인의 사건부담 수를 줄이려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고심 사건 수를 늘리는 상고법원안**은, 주객이 전도된 논의가 아닐까요? 법률심으로서 상고심 비중의 정상성이라는 면에서, 상고법원은 비정상을 더 비정상으로 만드는 안이 아닌가요?

● 현재의 과다한 업무량이 비정상적 재판, 사법불신을 낳는다고 확신

☑ 8. 11.자 이메일

사건이 폭주할 때, 충실화된 심리로, 사건처리를 늦추어야 했던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대응방안이었을 것입니다. **불충분한 심리**로(충분과 불충분의 기준은 개인 판사의 의견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 1심 재판의 평균적 수준은 불충분입니다) **통계에 맞추어 사건처리 속도를 빠르게 유지, 혹은 더 빠르게 만드는 방향으로 달려온 것이 지금의 파국**(...파국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기는 합니다)에 달한 것입니다.

- 전형적인 이론가 ⇨ 본인 스스로 **상고법원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상태이고, **현재 대법원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

☑ 8. 11.자 이메일

사실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만큼, 뛰어나면서,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진 엘리트들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집단도 한국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고법원에 사로잡힌 이 집단 지성의 획일성과 의사소통의 경직성, 검증되지 않은 주입된 논리에의 순응성 내지 자기내면화**는 왜일까요? 특히 **상고법원 안과 관련하여서도, 충실한 자기생각으로 고유한 사색을 행하여 답을 찾아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논리를 보여주는 판사님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 **심리불속행 폐지에 대한 반감**이 가장 강함

☑ 8. 11.자 이메일

상고법원 도입과 **심리불속행 폐지**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고심 비중을 더 올리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이 전 이상합니다. 이건 상고심이 법률심이어야 한다는 명제에서 가장 먼저 도출되는 결론입니다.

- 법관 노조와 같은 **법관 결사 단체의 결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 8. 11.자 이메일

제 글에서 빠진 수많은 문제의식 중 하나는 **법관 결사조직, 법관 단체의 역할론**입니다. 한국도 한국 법관연합 등의 단체가(**독일이나 프랑스는 법관노조**도 있지만, 노조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한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겠지요?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요. 상고법원이 불가피한 논리와 비슷해졌네요. 하지만 이 부분은 진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무게를 지고 있는 문제니까요). 한국 사법부의 의사결정 구조는, **행정처로 대표되는 사법행정 관료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법관 결사 단체의 부존재**로 인하여 더 왜곡된 측면이 큽니다. 거기에다가, 재판업무로 치이는 일선 판사의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 고민한 여유는 더 없고, 견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 대법원은 판사 수의 대폭 증원을 바라지 않는다고 확신

☑ 8. 13.자 이메일

▶ **대법원은 판사 수의 대폭 증원은 바라지 않고 500명의 증원을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만, 상고법원에 쏟는 에너지를 판사 수 증원에 다 쏟아 부으면 500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증원이 가능합니다. **상고법원이 태풍의 눈처럼, 다른 중요한 이슈에 들일 노력을 먹어갑니다.**

▶ 지금 엄청난 통계압박으로 판사들을 관리하고, 감사 때마다 다양한 통계분석으로, 조금이라도 사건처리율이 내려가면 압박해가는, 이 시스템의 정점에는 대법원장님이 있는데, **신속한 심리를 대법원장님이 내려놓는 결단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업무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대법원장님은 판사 수를 늘리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풍문**을 자주 들었고, 어느 한 판사님은 **사건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 판사는, 늦게 까지 일하기 싫다는 판사는 법원을 나가라는 이야기를 대법원장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했는데... 제가 들은 풍문들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 아닌 듯 합니다.

▣ 대법관 증원론에도 호의적인 입장 유지

● 핵심적인 주장은 ① **"법관 대폭 증원을 통한 사실심 충실화"**와 ② **"상고허가제"**이지만, ③ **"대법관 대폭 증원"**에도 호의적인 입장 유지 ⇨ **"상고허가제"와 "대법관 증원론"을 동시에 추진**하면 **대법원 재판이 더욱 충실해 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됨 ⇨ **민변의 입장과 유사**(실제로도 차○○ 판사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친분**이 있음)

☑ 8. 13.자 이메일

▶대법관 증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법원만 OK하면 대법관은 금방 증원됩니다. 상고법원 반대론자들이 다 대법관 증원을 원하는데,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만 OK하면 됩니다. 50명, 100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3-4명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3~4명과 50명, 100명 사이에는 무수한 숫자들이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무엇을 근거로 하신 것인지 궁금한데, 혹시 전원합의체의 문제를 이유로 한 것이라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200명(부정확할 수는 있습니다)의 법관이 있는 민, 형사 사건을 다루는 연방일방법원의 예를 부정적 예로 드는데, 과연 기능의 측면에서, 독일 연방일반법원 혹은 5개 연방법원이 만들어내는 상고심 판결들의 질("질"은 뭘로 평가할까요?)은 일부 부간의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한국 대법원보다 결코 낮지 않습니다. 사실 더 높겠죠. 사회적인 존중과

신뢰도도 높고. 전합문제를 해결하는 나름의 방법론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많은 판사수의 장점을 가릴 정도는 결코 아닙니다. 스페인에 연수 다녀 온 분께, 20-40명의 스페인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방법론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몇 개 안되는 전원합의체를 가지고 전원합의체의 어려움을 대법관 증원의 반대 논거로 드는 것은 표면적**이고, **대법원은 대법관 수가 느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법원 외부의 인사들이 다수 들어올 통로가 된다는 위기의식, 그래서 법원의 독립을 해할 수 있다는 논리**... 이 부분은 별도의 논쟁적인 이슈이므로 나중에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합니다.

▶소부간의 판결의 불일치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소부 간의 불일치는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진행하는 사건의 뇌손상으로 인한 편마비에서 파생장해에 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도, 2개의 대법원 판결이 모순됨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발견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이지, 발견되면 그 다음 사건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로 그런 모순의 가능성은 점점 더 줍니다.

☑ 8. 17.자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토론광장 게시글

▶주변의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가들부터 설득하고 토론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전 변호사 단체 고위 임원으로서, 사실심 충실화 논의를 전제로 한 상고법원에 찬성한 분께 전화를 드려 40여분 정도 토론**을 해봤고, 사실심 판사 대폭(1.5배~3배) 증원으로 1심에서 모든, 주장, 입증을 다 심리하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증거발굴에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상고허가제 도입이 바른 방향이라는 공감을 얻었습니다. 다만 **법원의 정책의지의 진정성을 문제삼으면서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해봐라. 그러면 대법원의 진심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불신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는 점**도 사실대로 밝혀봅니다.

4. 대응 방안

가. [총론] 방향 설정

▣ **관망 v. 사전예방적 대응 ⇨ 사전예방적 대응 필요**

- 차○○ 판사의 주장이 '상고허가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걱정할 수준은 아니므로, 당분간 관망해 보자는 주장도 존재
- 차○○ 판사의 문제의식은 '상고허가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핵심은 '상고허가제'가 아니라 **'법관증원'**이고 이는 **서기호 의원 등이 주장하**

는 '대법관 증원론에 기초를 둔 상고법원 반대론'과 맥락을 같이 함

> ☑ 서기호, '상고법원의 새로운 시작,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한겨레, 7. 29.)
> 필자가 판사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법원이 일선 판사들에게 '충실한 재판보다는 신속한 재판'을 은근히 강요**한다는 것이다. 판사들의 근무점수를 주는 법원장들은 사건처리 건수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일선 판사들은 사건 처리 속도와 처리 건수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심지어 판사들에게 사건처리 통계표를 회람시키는 법원장도 있었다. 소속 법원의 사건처리 속도를 잘 관리하는 법원장들은 대법관 후보로 낙점받는 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판사들에게 있어 '사건'이란 당사자들의 억울함이 절절히 묻어나는 '해소되어야 할 고통'이 아니라, 신속히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한다.

- 차○○ 판사가 **제기하는 의문**을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 적시에 해결**하지 못하면, **오해에서 기인한 다소 과격한 주장을 하는 다른 판사들의 글들이 코트넷 게시판에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생각이 정리되면 글을 하나 올리겠다는 판사들 여럿 있음), 만일 **언론보도**가 된다면 **상고법원 입법 전략에 가해지는 피해**가 너무나 클 것임

▣ **지원장, 법원장의 개별 면담 v. 논리적 설득 ⇨ 논리적 설득 필요**

- 차○○ 판사는 현재 상고법원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완료된 상태 ⇨ 자신의 의문을 풀어줄 **논리적 답변**을 원함
- 논리적 설득 논거 없이 법원장, 지원장 등을 통한 개별 면담은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이 많음

나. [각론] 구체적 대응방안

1 [1단계] 행정처 경험 있는 부장판사를 통한 논리적 설득

- 차○○ 부장판사(○○기, ○○○○지법, 前 사법등기국장) ⇨ 차○○ 판사와 사촌관계
- 차○○ 부장판사가 차○○ 판사에게 아래의 사항들을 논리적으로 설명

- 현재 **심리불속행결정**을 할 때에도 **일반 상고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건기록을 검토**하되, **결정문만 간이하게 작성**하고 있을 뿐임 ⇨ **심리불속행제**

도를 폐지하더라도 판결문을 작성하여 **답변기능만 강화**될 뿐이고, **상고심의 업무부담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님**

- 차○○ 판사가 주장하는 **'상고허가제 + 법관증원론'**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경우 현재의 입법 상황에서 서기호 의원 등이 주장하는 **'대법관 증원론'**으로 연결되어 **왜곡될 위험**이 존재함

☑ 차○○ 부장판사의 설득 결과 ⇨ 실패

▶차○○ 부장판사가 지난 주말 각 2시간 정도씩 2회에 걸쳐 차○○ 판사와 통화하였으나 차○○ 판사 설득에 실패

▶차○○ 판사의 답변 요지(지난 주말: 8. 16.)

- 상고심 기능 개선의 가장 이상적인 수단은 **상고허가제**인데, **상고법원**을 도입할 경우 **상고허가제 도입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법관 대폭 증원을 통한 업무경감**인데, **현재 대법원이 제시한 사실심 충실화 방안**은 **법관 대폭 증원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으므로 미봉책에 불과**함

▶답변 이후의 상황 ⇨ 차○○ 판사 8. 17. 코트넷 글 다시 게시

- 법관 증원을 위한 판사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변호사들에 대한 판사 개개인의 설득이 필요함
- 대법원이 마련한 사실심 충실화 계획은 상고법원안 통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함
- 상고법원안은 상고허가제로 연결될 수 없음
-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토론광장에서의 판사들의 토론 활성화를 위하여 차○○ 판사 본인은 당분간 글을 올리지 않겠음

2 [2단계] 법관증원론에 대한 共感을 통한 戰線 이동 필요

"법원행정처 v. 일반 판사" ⇨ "사법부 v. 법무부, 기재부, 국회"

● 현재 차○○ 판사가 요구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법관 정원 증가에 대한 설명이 아님**

- **최대 500명의 법관 증원**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독일 수준의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1.5배 ~ 3배의 법관 증원을 요구
- **많은 판사들의 공감**을 얻고 있음

- 법원행정처가 8. 11. 실시한 서울동부, 수원지법 법관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다수의 법관들이 "상고법원 도입과 함께 하급심 법관의 업무부담도 줄여 나가겠다는 큰 틀의 정책이 같이 제시되면, 판사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음

- 대법원이 내심으로는 법관 증원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도 존재

-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법관증원론에 대해 공감을 표시할 필요 있음

- 공감 표시만으로 판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음

- 어차피 법관증원론은 법무부, 기재부, 국회의 반대로 실현이 쉽지 않음 ⇨ 대법원이 굳이 공감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판사들과 전선을 만들 필요 없음

☑ 법관증원론에 공감을 표시하는 대법원의 글에 포함될 내용

▶ 법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고 있다는 점을 대법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 대법원은 그동안 법관 증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음

▶ 법관증원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

- 판사들은 고급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음 ⇨ **국회 입법조사관들도 알 수 있는 수준의 입법과정에 대한 공개된 정보(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1소위 회의록)는 과감하게 판사들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회 등이 법관 증원을 심사할 때 사용하는 각종 기준(예: 접수사건 증가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있음

▶ 법관 증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제시해 줄 것을 요청

- 다만, 상고법원에 집중되어야 할 에너지가 법관증원론 쪽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있음

③ [3단계] 집단적으로 사건 적체 결의하자는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이○○ 판사의 사망, 차○○ 판사의 코트넷 게시글 등으로 인하여 판사

들 사이에서는 **집단적으로 사건 적체를 결의하자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음

- **법원행정처가 법관증원론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면서, 법관 증원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경우, **상당수의 판사들은 그 대안으로 법원행정처가 사건 적체를 어느 정도 수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우려** 있음 ⇨ 대응 논리, 대응 방안 마련 필요함 <끝>